

Dongguk for you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장동기 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장동기 교수가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 연구재단에서 선정하는 ‘2017년 월봉학술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됐다.

학술연구비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학회 발전과 평생회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학문발전에 괄목할만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연구 계획에 대해 선정 지급한다. 또, 학술연구비 수혜는 매년 한편을 공모하여 선정하게 되며, 연구비는 사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해 연구자 개인이 아닌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나 연구자가 지정하는 연구비관리 단체를 통해 받게 된다. 장 교수의 이번 논문은 ‘이전 미다졸람 역설반응이 있었던 환자의 진정내시경 시 프로포폴 단독과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의 병합요법의 비교: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 대조’에 대한 연구이다.

장동기 교수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연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직원 연우회,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동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1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는 10여 명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연우회원 및 기타 일산지역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1,000여 포기 김장김치가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300여 가정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에 참석한 한 연우회원은 “추운 겨울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가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우회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불자모임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장애 요양시설 및 독거노인 방문 봉사, 지역사회 복지관 연계 봉사, 사찰 및 승가대학 방문 의료 봉사 등을 연 20회 이상 진행하며, 부처님의 자비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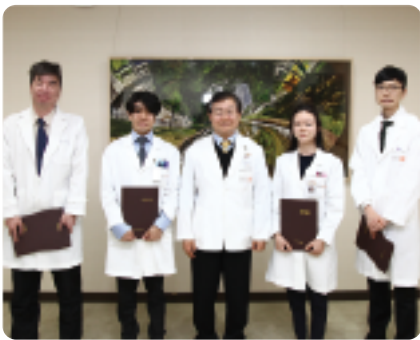
2017년 의무기록 우수과 및 우수의 표창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무기록실은 지난 11월 EMR 위원회에서 선정된 의무기록 작성이 우수한 진료과와 전공의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2017년 올해 의무기록 우수과는 신경과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수의는 안과 전공의 이상재, 정형외과 전공의 김재현, 내과 전공의 양희진이 각각 선정 됐다.

우수과는 표창장과 상금 50만 원, 우수의는 표창장과 상금 20만 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EMR 위원회는 한 해 동안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의무기록 작성에 힘써 주신 진료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내년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대비하여 의무기록 작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특수 · 한방 간호팀, Know-how 공유의 장 개최

특수 · 한방 간호팀은 지난 11월 23일 ‘소통으로 하나 되는 특수 · 한방간호팀’이라는 주제로 Know-how 공유의 장 및 HOPE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직장생활 중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로 구성된 ‘선 · 후배 간호사의 마음속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 발표하여 공유했다.

또, 원내 CS강사는 ‘즐거운 직장생활’을 주제로 간호현장의 긍정적인 문화형성을 위한 칭찬과 감사의 지속적 실천이 만들어 내는 놀라운 변화를 주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 이어, 특수 · 한방간호팀은 ‘HOPE DAY’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부서원 간 상호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간호사는 “즐거운 일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임을 알게 되었으며,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스마트 Tip⁺

2017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 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자 본인	10만 원 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 15%
법정기부금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3천만 원 초과분 2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자 본인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15%
지정기부금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2천만 원 초과분 30%)